

# 대학발전계획 수립과 운영 규정

□ 제정 : 2019. 06. 18.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의 달성 및 교육품질의 개선을 위하여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와 개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대학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교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체계, 예산 등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② ‘대학발전위원회’란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③ ‘대학발전TFT’란 발전계획의 재수립 시 대내외 환경분석, 구성원 요구분석 등을 통해 발전계획안을 수립하는 팀을 말한다.

④ ‘과제주관부서’란 발전계획의 각 추진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행정부서를 말한다.

④ ‘대학발전계획추진단’이란 발전계획의 추진을 담당하는 과제주관부서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⑤ ‘자체평가’란 발전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정도 평가 등 발전계획 추진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말한다.

## 제 2 장 관 리 체 계

**제3조(대학발전위원회)**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를 두며, ‘대학발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4조(대학자체평가위원회)** 발전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대학자체평가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5조(대학발전계획TFT)** ① 발전계획의 수립 시 계획안을 수립하는 조직으로 기획과에서 구성하여

#### 4-2-44 대학발전계획 수립과 운영 규정

운영한다.

② 대학발전계획TF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동향, 고용동향, 교육환경, 정부정책, 미래전망 등의 외부 환경 분석
2. 이전 발전계획의 성과분석, 대학경쟁력분석 등의 내부 환경 분석
3. 학과·부서별 발전계획 분석, 교직원·재학생·산업체 설문분석 등의 구성원 요구 분석
4. 대학에 대한 SWOT 분석
5.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발전계획안 수립

**제6조(과제주관부서)** 발전계획의 과제(또는 그 이하 세부과제)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 과제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실행
2. 담당 과제의 예산 편성과 집행
3. 담당 과제의 성과 보고

**제7조(대학발전계획추진단)** ① 발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기획과에서 과제주관 부서의 대표자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학발전계획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전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 실행 총괄
2. 발전계획 예산의 집행 관리
3. 발전계획의 성과 관리

### 제 3 장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제8조(계획수립)** ①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대내외 변동요인 발생 시 일몰에 관계없이 재수립할 수 있다.

② 대학발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획과에서 대학발전계획TF를 구성하고, 대학발전계획TF는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대학발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발전계획안은 대학발전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이사회의 단계별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해 공표한다.

④ 발전계획안에는 과제별 주관부서, 추진일정, 소요예산, 성과지표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연차별추진계획수립)** ①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은 발전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을 기본으로 한다.

- ② 학교정책, 대학자체평가,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등과 과제주관부서의 의견에 따라 당해 연도 과제를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매년 확정한다.
- ③ 기획과는 전 항에서 확정된 과제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정해 공표하고, 대학발전계획추진단에 게 통지한다.

**제10조(연차별과제추진)** ① 대학발전계획추진단은 과제주관부서별로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야 한다.

- ② 대학발전계획추진단은 과제주관부서별로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제 4 장 성 과 관 리

**제11조(자체평가)** ① 대학발전계획추진단은 매학년도 말에 과제주관부서별로 목표달성여부를 포함한 당해연도 추진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평가과에 제출해야 한다.

- ② 대학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발전계획추진단에서 제출한 추진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당해연도 대학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③ 평가과는 당해연도 대학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학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대학발전과 교육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대학발전위원회는 자체평가 결과 과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과제 내용의 변경, 성과지표 목표값 조정, 예산 조정, 추진일정, 주관부서 변경 등 과제를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